

서울상상나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911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상상나라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어린이 복합체험 문화 시설로 놀이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전시와 나눔·생태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극·공연 및 문화 행사를 진행하며 어린이의 발달과 창의성 증진에 앞장서 옴.
- 나. 서울상상나라는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안전한 실내 체험과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연령별 발달에 따른 적합한 체험전시 제공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전인적 발달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가족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다. 이에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기관 운영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기관명 : 서울상상나라
- 개관일 : 2013. 5. 2. ※ 건립기간('08. 3.~'13. 3.)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 내)
- 규모 : 연면적 19,692㎡ (지하3층, 지상3층)
- 입장인원 : 일 최대 2,500명, 시간당 최대입장인원 400명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시설·설비관리를 제외한 서울상상나라 운영·관리 일체
 - 체험관, 교육실, 수장고, 로비, 사무실 등 전시 및 교육을 실시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및 장비·비품의 관리 운영
 - 수유실, 관람객 휴게실, 의무실, 식당 등 입장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 및 장비·비품의 관리운영
 - 체험전시물 일체의 기획·개발, 조사·연구, 전시디자인·연출, 전시물 설계·제작·설치·유지관리 등 제반 업무
 -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위탁기간 : 3년(2024. 11. 1. ~ 2027. 10. 31.)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4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24.4.16.)
- '24년 소요예산 : 4,553,611천원
 -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3,447,489천원, 사업수입 1,096,122천원, 법인전입금 10,000천원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위탁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필요성

- 서울상상나라는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의 전문지식 및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어린이의 발달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전시 및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본 사업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전시·교육 사업으로 공공성은 있으나 민간위탁에 제한될 정도로 공익성이 강하지는 않으며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음
- 민간위탁 운영으로 공무원 수 증가 억제, 인건비 경감 등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입장객, 연간회원 수, 프로그램 참여 인원 등의 산정을 통해 가시적인 사업 성과 측정 및 사업의 효과성 평가가 가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서울상상나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투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상상나라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아이돌봄담당관 돌봄총괄팀 손정민(☎2133-4806)